

제 755 호
1980. 3. 4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정상 천
편집: 문화공보관 심계섭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보

차 례

◎ 규 칙		
제 1847 호 :	서울특별시한강보건위원회조례시행규칙.....	3
◎ 고 시		
제 79 호 :	도시계획시설(유수지)결정및지적승인.....	4
제 80 호 :	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변경.....	4
제 81 호 :	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실효고시.....	5
제 82 호 :	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.....	5
제 83 호 :	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.....	6
제 84 호 :	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.....	6
◎ 공 고		
제 56 호 :	KS 표시정지차분해제공고.....	7
제 33 호 (성북구공고) :	공인개자공고.....	7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㉔
1980년 3월 4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847 호

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
조례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의안제출) ①위원회의 위원 서울특별시 (이하 '시'라 한다) 국장 (시경찰국장 포함) 및 시교육위원회 국장은 한강보전에 필요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②의안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들 첨부 문서로 제출하고 제안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

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에서 확정된 의안은 소관 국장이 그 사업을 추진한다.

제 3 조 (소위원회) ①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요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특별한 조사·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소위원회는 환경국장이 수재하고 환경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위원중에서 구성한다.

③소위원회의 심의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확정한다.

④소위원회의 회의소집, 의결방법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의한다.

제 4 조 (운영세칙)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9 호

도시계획시설 (유수지)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유수지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

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하수시설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 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인다.

1980.3.3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유수지	관악구혹석동 105 일대	7,741㎡	

* 별첨 도면표기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0 호

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변경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

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경기도 시흥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.

1980.3.3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 정 변경	중단합	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159-100 일대	673㎡ (204명)	
	"	"	"	폐 지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1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실효고시</p> <p>1. 건설부 고시제 203 호 (75.12.20) 로 결정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에 대한 실효고시를 도시계획법 제 14 조와 건설부고시</p> <p>○ 고속철도 (본선) 실효고시</p>	<p>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과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3.3 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구분	시설명	연장	주요경과지	비고
실효	고속철도 (지하철 4호선)	본선 12km	이화동-동대문-을지로 6가-강충공원-약수동-한남동-보광동-동빙고동-영동고속버스터미널-서초동-우민동	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2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511 호 (79.12.13) 및 동고시제 32 호 (80.2.1) 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허가하고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관할 구청 도시정비</p>	<p>과 및 시민봉사실 학교법인 영락학원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3.3 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74-174외 29필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서울영락상업고등학교</p> <p>다. 사업면적 및 규모 : 13,363㎡ (4,042평)</p> <p>라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: 서울</p>
--	--

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26-13
 학교법인 영락학원 이사장 박조준
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:
 착수: 시행허가일
 준공: 1981.2. .
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
 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
 권 이외의 권리명세: 별첨 (생략)
 사.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
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, 성
 명: 별첨 (생략)
 마. 시행허가설계도서: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 호 (78.1.30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기에 대한 변경 허가물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(79.12.10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3.4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강남구 개포동 457
 번지 일대
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제
 회사업 (학교) 시행
 수도공업고등학교 신축건설
 다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: 서울특
 별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5 번지
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준
 라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 착 공: 1978.2. 1
 당초준공예정일: 1979.9.30
 변경준공예정일: 1980.6.30
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
 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
 권리명세서 (생략)
 바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
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
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
 명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5 호 (78.6.21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기에 대한 변경허가물 도시 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3.4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지: 강남구 도곡동 91번지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
숙명여자중고등학교

다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: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-12
숙명학원이사장 채완선

라.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
착 공: 1979. 2. 24
당초준공예정일: 1979. 12. 30
변경준공예정일: 1980. 4. 30

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(생략)

바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인의 주소 성명(생략)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56 호

KS 도시정지처분특례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 401 호(79.12.

()로 KS표시 정지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뢰와 같이 해제하고 동일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한다.

1980.3.3

서울특별시

1. 허가번호: 제 1736 호
2. 허가일자: 79.1.31
3. 제조업체명: 파이로금속공업(주)
4. 대표자: 권오광
5.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65번지
6. 규격번호: KSD 6003
7. 품 명: 화이트 메달
8. 종 류: 2B, 6, 7 중
9. 처분일자: 79.12.1
10. 해제일자: 80. 3. 1

○ 성북구공고제 33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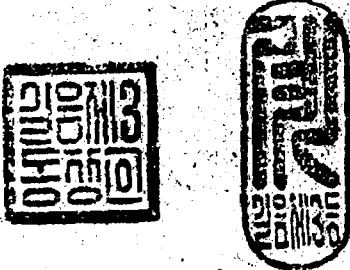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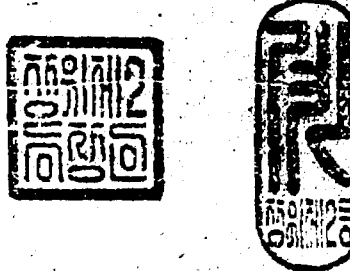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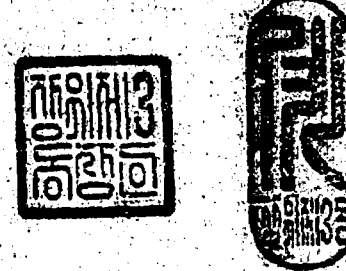
공인 개 각 공 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장직인을 개각하였기 동조제 9 조에 의거 공고함.

1980.2.20

성 북 구 청 장

1. 개각사용년월일: 1980.3.1 09:00
2. 개각된 직인 및 제인: 다음

인 장		인 장		
부 의 명	김 음 제 3 동 장 인 및 제 인		중 암 제 1 동 장 인 및 제 인	
인 장		인 장		
부 의 명	감 위 제 2 동 장 인 및 제 인		감 위 제 3 동 장 인 및 제 인	